

## 전장(戰場)이 된 제주4·3평화공원

폭동론의 ‘아른거림(absent presence)’과 분열된 연대

김민환\*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락 — 희생자들의 무고한 희생을 인정하는 것 — 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단락 —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 을 시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앞에 두고 이 논문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단락의 모든 갈등과 타협이 응축되어 있는 제주4·3평화공원의 형성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이 작업은 한편으로 첫 번째 단락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단락에서 예상되는 갈등지점들을 미리 정리하는 의의를 갖는다.

제주4·3사건에 대한 해석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지배 세력의 해석인 ‘폭동론’이며, 둘째, 다양하게 분화된 ‘항쟁론’이며, 셋째, ‘양민학살론’에서 출발해서 ‘국가폭력론’으로 이어진 해석이다.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항쟁론’ 및 ‘양민학살론(국가폭력론)’은 ‘폭동론’에 대항해서 강한 연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으로 4·3사건의 해결이 모색됨에 따라 ‘국가폭력론’은 ‘항쟁론’과 분리되기 시작했다. 특히 제주4·3평화공원의 형성과정에서는 이 두 입장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 비록 ‘국가폭력론’과 ‘항쟁론’의 갈등이 표면화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입장의 갈등은 ‘폭동론’에 의해 구조적으로 매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폭동론’의 ‘아른거림(absent pres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ursamajor@dreamwiz.com

##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주4·3사건은, 여야 합의에 의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 의거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 보고서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유족 및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으로 ‘하나의 단락’이 마무리되었다. 아마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4월 3일을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이라는 명칭의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최근의 일일 것이다.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이런 해결과정은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보수정권’이라도 공식적으로 이 과정에 반대되는 시도를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직후,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지금까지의 해결과정을 되돌릴 목적으로 「4·3특별법」의 개정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강한 비판을 받아 그 시도를 철회했다. 물론, 이 과정을 보수정권은 자신들의 손으로 적극적으로 더 진척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제1회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하는 의견<sup>1)</sup>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

그런데, 이런 안정성은 다른 한편으로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막는 ‘구조적 제약’이기도 하다.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제주4·3사건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리하면서 그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는 점을 확정하는 과정이었다. ‘4·3위원회’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주4·3사건은 “1947년

1) 4월 2일 오후 7시에 방송된 CBS FM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박찬식 4·3 추가진상조사단장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발언은 《노컷뉴스》 2014년 4월 3일 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nocutnews.co.kr/news/4000020>(검색일: 2014.4.17.)].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536)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서 수식어를 모두 제외하면, “제주4·3사건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4·3사건 해결의 두 번째 단락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질 것은 바로 ‘주민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착수되어야 비로소 제주4·3사건 해결은 이전 단계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다른 단계로 비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안정성 그 자체를 뒤흔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면, 앞에서 언급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한 다음 단락으로의 도약을 주장할 공간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퇴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상유지전술’에 복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첫 단락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단락을 향한 도약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세력들에게 기껏해야 첫 단락의 마무리를 잘하라고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수세적 대응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방어적 선제공격’인 셈인데, 제주4·3사건 해결과정을 거스르고자 시도하는 세력들의 진정한 전술적 효용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논문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현재의 이런 ‘공모적 안정성’의 구조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락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두 번째 단락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과 방화물의 목록이 완성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제주4·3 평화공원 형성의 정치학이다. 제주4·3평화공원은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되었을

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며,<sup>2)</sup> 첫 번째 단계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모든 갈등과 타협이 응축되어 나타난 장소이다. 따라서 이 제주4·3평화공원이 형성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면, 제주4·3사건과 관련된 갈등 및 연대의 향방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제주4·3평화공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4·3사건을 해석하는 입장들과 그들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제주4·3평화공원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기본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이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 2. 제주4·3사건에 대한 세 가지 해석과 상호관계의 기본구조<sup>3)</sup>

### 1) 제주4·3사건에 대한 초기의 냉전적 해석: ‘폭동론’과 ‘반분단 항쟁론’

제주4·3사건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해석은, 제주4·3은 ‘공산폭동’이라는 것이다. 이 해석은 1948년 4월 3일 무장대의 제주도 일원에 대한 습격이 있는 직후 당시 조병옥 경무부장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그는 4월 5일 5·10총선거 촉진 대강연회 석상에서 ‘제주도서 총선거 반대 폭동이 일어났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제주경찰청 등 미군정 경찰관계자들은 무장대의 습격을 즉각 ‘폭동’으로, 무장대를 ‘폭도’로 규정했다(박찬식, 2007: 172). 그들의 이런 인식은 4·3사건의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해석이었다. 미군과 지배세력에게 ‘4·3’은 ‘대구 10월폭동’과 ‘여순반란사건’과 동일하게 ‘폭동’ 혹은 ‘반란’이었을 뿐이다. ‘폭동’과 ‘반란’은 진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에서는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빨갱이’로 치부되어 ‘죽임을 당해도 되는 자’로

---

2) 시간적 차원의 상징은 ‘국가기념일’이다.

3) 이하에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관련 내용이 발췌되어 이 논문의 문제의식 및 서술방식에 부합하도록 재배치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인식되었다. 토벌대에 의한 주민들의 무고한 희생과 피해는 아예 외면되거나, 희생자 혹은 피해자 자신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적 물적 피해는 좌익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몰이붙였다. 일방적 단죄나 다름없었던 ‘폭동’ 혹은 ‘반란’으로의 규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의 권위로써 뒷받침되는 유일하고 확고한 공식규정으로서 1990년대 중반까지 거의 50년 동안 반공주의 지배담론의 주요 자원을 이루어왔다(김영범, 2003: 70~71). 이러한 입장에서는 4·3의 배경, 진행과정, 피해양상 등 4·3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전혀 필요가 없었다. 그저 ‘4·3’은 ‘공산폭동’으로만 이해하면 충분했던 것이다.

‘공산폭동’이 4·3에 대한 미군과 지배세력의 입장이라면, 그것을 정반대로 뒤집으면 북한 및 좌익세력의 인식이 된다. 이들은 제주4·3을 미군과 지배세력이 추구하던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 저항한 ‘제주도 인민들의 항쟁’으로 해석했다(박명림, 1999: 438). 《독립신보》, 《우리신문》, 《조선중앙일보》 등 좌익계 신문들은 1948년 4월에서 5월 동안 4·3사건을 다루면서 ‘소요사건’, ‘무장봉기’, ‘제주도의 항쟁’, ‘제주도 인민봉기’ 등으로 보도했다. 이들은 항쟁이 목적의식적이고, 조직적이며, 고도로 정교한 이데올로기성을 띤 친북, 친공산주의적 성격이 있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냈다. 단선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 등의 구체적인 목적이 제주도 이외의 남한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좌익세력들에 의해 주장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제주도민들의 연관성을 전제했던 것이다. 이런 해석은 미군 및 지배세력의 ‘공산폭동론’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적인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었다.

## 2) 새로운 해석의 등장: ‘양민학살론’의 담론적 특징과 한계

제주4·3을 ‘폭동론’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시도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4·19혁명 직후 열렸던 새로운 정치적 공간에서 출현했다. 4·19혁명 이후 새로운 움직임의 특징은 제주4·3사건을 ‘양민학살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민학살론은 기본적으로 무장대라는 ‘적’이 아닌, ‘양민’들조차도 학살한 토벌대의 만행에 대한 고발이었다. 토벌대는 그들이 처형한 사람들을 모두 ‘양민으로 위장한 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을 덮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바로 ‘양민학살론’이었다. 토벌대가 학살한 제주도 주민들 대부분은 무장대에 동조하는 등 반란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라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양민학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양민학살론’은 지배담론인 ‘폭동론’적 시각에 대한 매우 통렬한 비판이었다. ‘폭동론’에 대한 매우 중요한 비판이기는 했지만, ‘양민학살론’은 다른 한편으로는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는 ‘폭동론’에 대해서 전혀 도전을 하지 않았다. 즉, 제주4·3의 성격이 ‘폭동’이 아니었다는 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폭동론’에 대한 근본적 비판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항쟁론’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폭동론’에서 주장하는 전제 일부에 대한 비판조차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제주4·3에 대한 ‘양민학살론’은 피해자들을 ‘양민’으로 설정함으로써 ‘무장대’ 출신 사망자와 ‘양민’들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끊어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양민이라는 말 속에는 ‘양민이 아닌 사람’, 즉 ‘빨갱이’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양민학살’이라는 명칭에는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양민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양민학살론’은 국가가 ‘빨갱이’를 죽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빨갱이’가 아닌 사람이 희생되었으니 이들을 ‘빨갱이’가 아닌 ‘양민’으로 환원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sup>4)</sup> 실체가 아닌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폭동론’의 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폭동론’의 해석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폭동론’의 해석처럼 제주4·3은 ‘폭동’ 혹은 ‘반란’이고, 그래서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양민’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양민’ 대신에 ‘민간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 제안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동춘(2000), 조현연(2000)을 참조할 것.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는 ‘양민학살’ 대신 ‘민간인학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3. ‘폭동론’에 맞선 ‘항쟁론’과 ‘국가폭력론’(‘양민학살론’)의 연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제주4·3에 관한 논의가 분출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제주4·3의 성격을 재규정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했다. 하나는 ‘항쟁론’의 부활과 분화이며, 다른 하나는 ‘양민학살론’이 발전한 ‘국가폭력론’이었다.<sup>5)</sup>

#### 1) ‘항쟁론’의 부활과 분화

##### (1) 북한 지향의 항쟁론

한국 사회에서 제주4·3을 ‘항쟁’으로 인식하는 해석의 부활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에 대한 저항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부정권하의 구조적 억압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저항의 무기로서 ‘항쟁론’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이때 ‘저항’해야 할 대상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된 세력으로서, 이들에게는 흔히 ‘반민족적, 비민주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따라서 민족적,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면, 이들의 주장을 전복할 필요가 있었는데, 4·3에 대한 지배 세력의 해석인 ‘폭동론’을 완전히 뒤집은 ‘항쟁론’은 그래서 매력적이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대학가 등지에서 소위 ‘민족해방론(NL론)’이 유행하면서 4·3과 관련해서 북한과 재일교포들의 서술을 복사하듯 기술한 지하문건들이 이런 해석을 주도했다(박명립, 1999: 435). 특히 무장대의 초기 지도자 김달삼의 월북과 그 이후 한국전쟁에서의 ‘빨치산’ 행적 등은, ‘폭동론’의 좋은 근거가 된 것처럼,

---

5) 김영범(2003: 78)은 크게 ‘민중항쟁론’과 ‘국가폭력범죄론’으로 압축되었다고 파악했다. 여기서 김영범은 민중항쟁론을 큰 덩어리로 묶었지만, 글의 서술 내용에서는 민중항쟁론의 외포와 내연이 다양함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제주4·3사건은 장기간 다양한 국면에 따라 전개되었기 때문에 어떤 국면의 어느 지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입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이론적 입장 모두는 특정한 ‘역사적 진실’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분출한 제주4·3에 관한 논의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김민환(2012: 162~164)을 참조할 것.

‘북한 지향적 항쟁론’의 좋은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 지향적인 이런 ‘항쟁론’은 그 후 다양한 방식으로 논박 당한다. ‘폭동론’을 뒤집은 북한 지향적인 이런 ‘항쟁론’에 대한 논박은, ‘폭동론’에 대한 논박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즉, ‘폭동론’이 부정되면 될수록 이런 북한 지향적인 ‘항쟁론’도 같이 부정될 수밖에 없었다. 제주4·3이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따라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위 ‘중앙지령설’은 4·3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조작이었음이 확인되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44~49). 또한, ‘중앙지령설’의 조작 사실과 함께 당시 제주도 좌파의 온건성 및 독자성에 대한 학술적 강조도 병행되었다. 이를 통해 제주4·3은 저항은 저항이되 친북 저항을 지향한 것은 아니라고 자리매김 되었다.

## (2) 적극적 항쟁론: ‘반외세-반분단 항쟁론’

‘북한 지향의 항쟁론’은 다양한 형태로 논박되었지만, 제주4·3의 항쟁론적인 측면 모두가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 지향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단의 과정에 저항한 통일운동의 의미를 분명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단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연계’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4·3 당시 제주에서 문제가 된 분단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북한을 지지하는 노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통일추구-총선반대-선거저지 및 불참이 남한거부-북한지지-공산폭동으로 연결되는 논리적 연쇄고리가 끊어지게 되었다. 김구와 조소앙이 총선을 거부했다고 해서 남한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부인과 북한정부에 대한 정통성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것이다. 국가형성 시기 모든 반(反) 이승만정부가 반남한, 반대한민국은 아니었으며, 모든 반정부가 반체제이자 반국가는 아니었음이 강조되었다. 또한, 월북을 감행한 김달삼 등 초기 무장대 지도자들의 “비현실적 친북 형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히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었다”(박명림, 1999: 443)는 점을 부각해서 항쟁의 ‘친북적’ 요소에 대한 거리두기를 분명히 했다. 또한, 5·10 총선거 거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적 선택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선거에의 ‘참여거부(abstention)’가 정통성의 부인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선거거부가 갖고 올 파장과 영향에



대해 저항 지도부는 더욱 신중했어야 하지만, 선거거부에도 불구하고 1948년 가을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쌍방의 자제에 의해 대규모 학살이 없었다는 점은 선거거부에 대한 국가당국의 인식이 절대적이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말을 바꾸면, 학살이라는 사태로서의 제주4·3은 저항으로서의 그것과는 일정하게 분리되어 초래된 사건이라는 것”(박명림, 1999: 439~440)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과의 연계를 부정하면서도 ‘반외세 반분단’ 항쟁으로 4·3을 바라보는 이러한 입장은 일종의 ‘적극적 항쟁론’을 구성한다. 특히, 5·10 총선거를 남한에서 유일하게 무산시킨 제주도의 상황은 반외세·반분단을 지향한 적극적인 항쟁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서 지적된다. ‘5·10 단독선거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통성의 기반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그와 반대로 남북한 통일민족독립정부의 수립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남한 단독선거론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공로자인 반면에 민족분단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5·10 선거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그런 ‘반민족적, 분단지향적’ 선거를 무산시킨 제주도민의 항쟁을 “통일정부를 갈망하는 민중의 의지를 대변”(양정심, 2000: 282)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 특별대에 의해 희생당한 것’으로 희생자의 모습을 재현하는 ‘국가폭력론’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무장대를 지지한, 혹은 적어도 적대하지 않은 제주민중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방점을 찍는다. ‘적극적 항쟁론’에서 무장대와 제주민중은 항쟁의 지향적인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 (3) 소극적 항쟁론: ‘자위적 항쟁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무장대와 분리된 제주민중들의 소극적 항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해석도 존재한다. ‘소극적 항쟁론’은 ‘자위(自衛)적 항쟁론’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4·3의 ‘항쟁론’적인 측면은 ‘반외세, 반분단’이라는 적극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정의 폭압에 대한 제주민중들의 방어적 항쟁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지향이나 목표를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항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억압에 대한 지구책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항쟁으로 ‘내몰렸던’ 점이 강조된다.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당시의

표어는 이런 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소재인 것이다. ‘자위적 항쟁론’의 입장에서는 무장대와 제주민중의 연대가 일종의 ‘강요된’ 연대라는 점을 암시한다. 미군정의 억압적인 통치 때문에 생겨난 미군정에 대한 반발이 무장대에 대한 지지 혹은 목인의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무장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지향 혹은 목적, 인적 사항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군정의 억압에 의한 제주민중들의 수난사가 집중적으로 강조된다. 그리고 무장대와 제주민중은 분석적 수준에서 ‘분리’된다. 이 입장의 대표적인 서술은 『진상조사보고서』이다.

## 2) ‘양민학살론’에서 ‘국가폭력론’으로

‘국가폭력론’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의 중심에 ‘항쟁’적인 측면보다는 미증유의 대량학살을 두고자 하는 입장으로, 제주도민 대다수의 심층기억 및 무의식적 원망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김영범, 2003: 78~79). “제주4·3사건 때 벌어진 대량 학살극은 다른 모든 논의들을 압도할 만큼 처참했기”(김종민, 1999: 402) 때문이었다. ‘폭동론’이 압도하던 상황에서 토벌대에 의해 사망한 사람 모두가 ‘폭도’는 아니라는 ‘양민학살론’이 제기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폭동론’에 대한 일종의 수동적인 반론을 조심스럽게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민주화운동의 진척과 함께, 또한 민주화운동 진척의 성과로 1995년 「광주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폭력’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면서 이런 ‘양민학살론’은 ‘국가폭력론’으로 발전해간다.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1996년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양민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정근식, 2009: 60).

‘폭도’에 대한 학살을 암묵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양민학살론’에 비해, ‘국가폭력론’은 군과 경찰이 자행한 모든 무차별적 민간인 살해, 수형인 불법 처형, 부녀자 성폭행, 가옥파괴와 촌락 폐허화 등을 국가가 수행한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국가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평등, 사회적 형평성 등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를 위배하

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행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사죄 및 보상을 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양민학살’은 ‘민간인학살’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인권’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시되었다. 그리고 ‘항쟁론’에서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었던(고성만, 2005: 353), 항쟁 세력의 무장 공격과 의도된 폭력, 학살 및 방화 등에 행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화할 수 있게 되었다(김영범, 2003: 79).

#### 4. 분열된 연대: ‘항쟁론’과 ‘국가폭력론’의 거리

##### 1) 「4·3특별법」의 위치: ‘항쟁론’의 보류

민주화의 진척에 따라 ‘폭동론’에 대한 반론들이 잇달아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폭동론’의 힘은 여전히 거대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전개된 제주4·3사건 진실 규명 운동은 더욱 강하게 추진되었고, 결국 ‘폭동론’의 공식적인 철회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폭동론’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연대했다. 특히 1998년 4·3사건 발발 50주년을 앞두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마침내 1999년 연말에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4·3특별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9년 통과된 「4·3특별법」의 내용은 여전히 ‘폭동론’의 힘이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폭동론’이 양보한 것은, 토벌대에 의해 사망한 사람 모두가 ‘폭도’는 아니었다는 점뿐이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전향적인 변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4·3사건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5·18’과 비교했을 때,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지만, 제주4·3은 여전히 ‘사건’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4·3에 대해서 ‘항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자 지향했던 ‘항쟁론’의 많은 부분은 제외 혹은 ‘보류’되었다. 특히, 당시 제주도민들을 적극적인 ‘역사의

주체'로서 파악하고 있는 '적극적 항쟁론'은 이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거나 분류되었다. 4·3사건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은, '폭동론'이 고수하고 있는 '폭동'이라는 4·3사건의 역사적 성격과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폭동론'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양민학살론'('국가폭력론')과 '적극적 항쟁론' 사이의 연대는 미묘하게 변화한다.

## 2) '폭동론', '항쟁론', '국가폭력론' 사이의 거리

앞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항쟁론을 세 가지 '이념형적'('북한지향적 항쟁론', '적극적 항쟁론', '소극적 항쟁론')으로 구분했지만, 사실 이 세 항쟁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제주4·3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가 이 세 항쟁론에서 각각 강조하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복잡하고 복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답론적 차원에서 '항쟁론'을 구분하는 것은, '항쟁론'이 '폭동론'과 '양민학살론'('국가폭력론')과 논리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지향적 항쟁론'은 '폭동론'과 완벽한 냉전적 대립쌍을 이룬다. '북한 지향적 항쟁론'이 강화되면 될수록 '폭동론'도 함께 강화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향적 항쟁론'은 '폭동론'을 부정하려는 저항 세력들은 '북한 지향적 항쟁론'도 함께 부정해야만 한다.

'적극적 항쟁론'의 경우에는 '폭동론' 및 '국가폭력론'과 논리적으로 미묘한 관계를 형성한다. '적극적 항쟁론'에서 제기하는 '반외세, 반분단'이라는 대의명분은, 현실적인 '대한민국'과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지만, 실질적인 통치지역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이다. '적극적 항쟁론'은 한반도 전체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한반도 민족주의'적 함의가 있다. 따라서 이 입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폭동론'과 타협하기가 매우 어려운 항쟁론이다. 물론 제주4·3을 매개로 '통일'을 지향하는 저항담론으로서 기능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틀 내에서 제주4·3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항쟁론의 '한반도 민족주의'는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적극적 항쟁론’은 토벌대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들도 적극적인 역사적 ‘주체’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추모하는 문제는 국가유공자가 된 토벌대 희생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문제는 제주4·3평화공원 형성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이 된다.

반면 ‘소극적 항쟁론’은 무장대와 제주민중을 분리하는 담론적 전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장대를 제외하면 ‘폭동론’과 협상할 여지가 매우 많다. 대다수의 제주민중을 반체제적인 항쟁에 참여한 것이라기보다는 비민주적 통치에 대한 일종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한 사람들로 간주하면서, 반체제적인 무장대와는 구분되는 범주로 제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자위적 항쟁론’은 ‘국가 폭력론’과 거리가 매우 가깝게 된다.

앞에서 강조했지만, ‘양민학살론’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형태의 담론이다. 여기에서 발전해 온 ‘국가폭력론’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부정적이지만, ‘국가폭력론’에서 ‘국가’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폭력을 행사한 ‘대한민국’이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는 것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하는 형태인 것이다. ‘소극적 항쟁론’과 ‘국가폭력론’의 입장을 ‘대한민국 공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 공화주의’와 ‘폭동론’이 기반을 둔 ‘대한민국 국가주의’의 거리는, ‘대한민국 공화주의’와 ‘적극적 항쟁론’이 기반을 둔 ‘한반도 민족주의’의 거리보다 정치공동체의 단위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화주의’와 ‘한반도 민족주의’ 사이의 이 ‘거리’야말로 바로 제주4·3사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장벽인 셈이다.

『진상조사보고서』의 서문에 “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사건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음을 못 박아두었다.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라는 ‘역사적 사건’은 오직 이 점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바로 여기까지였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 5. 제주4·3평화공원의 탄생의 정치학

### 1) ‘폭동론’의 존재: 구조적 제약 조건

제주4·3특별법은, ‘폭동론’의 지속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또 ‘폭동론’의 견제 때문에 ‘적극적 항쟁론’의 내용을 보류<sup>6)</sup>하면서, ‘소극적 항쟁론’과 ‘국가폭력론’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된 법이었다. 따라서 이 법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제주 4·3평화공원은 마찬가지로 ‘소극적 항쟁론’과 ‘국가폭력론’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제주4·3평화공원의 조성과정에서 ‘폭동론’의 제약과 ‘적극적 항쟁론’의 항의 모두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주4·3사건을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극적 항쟁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과정에서 제주4·3사건을 규정하는 ‘항쟁’과 ‘학살’이라는 두 축 중 사라진 ‘항쟁’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제주4·3평화공원에서 ‘항쟁’이라는 또 다른 축이 자리 잡기를 원했던 것이다. 반면, ‘폭동론’을 고수하는 세력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자체에 반대했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반대 중 훨씬 근본적인 구조적 제약 조건은 ‘폭동론’의 존재였다. ‘적극적 항쟁론’의 항의가 평화공원의 공간적 구성이나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 내용을 둘러싼 ‘내부적 이견’이었다면, ‘폭동론’의 존재는 평화공원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론적 반대’였기 때문이다. 이런 ‘폭동론’의 반대는 매우 강력해서 제주4·3평화공원 조성의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 
- 6) 담론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의미이지, ‘적극적 항쟁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4·3특별법』 제정운동과 그 이후의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배제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4·3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한 세력들은 오히려 이들이 었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폭력’에 대한 고발을 우선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데 동의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일종의 단계론적 전술로서, ‘역사적 평가’를 뒤집기 위한 ‘우회로’로서 ‘대한민국 공화주의’의 내용을 수용했던 것이다.

## 2) 제주4·3평화공원에서 형상화된 ‘대한민국 공화주의’의 내용

‘폭동론’과는 ‘국가폭력론(양민학살론)’을 무기로, ‘적극적 항쟁론’에는 ‘자위적 혹은 소극적 항쟁론’을 제기하면서, 양측으로부터의 요구를 때로는 수용 혹은 타협하면서 때로는 보류하면서 제주4·3평화공원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공화주의’의 최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그 공간을 형상화하게 되었다. ‘국가폭력론’ 및 ‘자위적 항쟁론’의 입장에서는 당시까지 이룬 성과, 즉, ‘폭동론’에 대한 공식적 철회라는 성과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폭동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을 회피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의 최대 목표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충실히 반영한 평화공원을 만드는 일이었다.

### (1) 국립묘지모델의 도입 및 지방색의 최소화: 부정된 ‘조성 기본계획’

제주도는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된 다음,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주4·3평화공원 디자인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선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에서 제안한 여러 사항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적극적 항쟁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국립묘지모델’의 우선적 배제이다. 여기에는 1탑 배제, 단축의 동선 배제, 좌우 대칭적 추모공간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셋째, 한라산 등 제주의 자연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제주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염원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sup>7)</sup>

‘기본계획’이 2002년 3월 14일 4·3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설계를 현상 공모했는데, 총 11작품이 접수되었다. 이 중 2002년 8월 27일 응모작품들을 심사하여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주)공간’)의 ‘상생의 성지’라는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제주4·3평화공원의 모체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당선되고 난 후 제주도 4·3관련

7)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2001)을 참조할 것.

단체들로부터 엄청난 항의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항의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한 가지 문제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본계획’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한 ‘국립 묘지모델’이 채택되었고, 그 결과 제주도의 자연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립묘지모델의 특징으로 ‘기본계획’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위압적 1탑체 제<sup>8)</sup>와 단축의 동선, 위계적인 좌우 대칭형 추모공간 등이었다. 그런데 당선작으로 선정된 (주)공간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국립묘지모델에 가까웠다. 특히 위폐봉안소 앞의 추모공간은 위계적인 추모공간으로 비판받았다. 이곳은 중앙의 통로를 기준으로 좌우에 정방형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는 위폐봉안소 앞이 소위 ‘귀빈식’이 되고 유족들이나 일반 참배객들은 정방형의 공간에 배치되어 일종의 위계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소위 연병장식 배열인데 이러한 정방형의 공간에 유족들을 앉혀 놓고 저 중앙통로로는 내노라 하는 정치가들이나 명망가들이 입장해서…… 연설하여 (유족들보다 먼저—인용자 첨가) 분향배례한 후 마지막으로…… 유족들은…… 분향하게 될 것”(편집부, 2002b: 37)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자연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앙의 위령탑이 있는 부분이 제주도 으뜸의 형태를 반영한 것이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그것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더욱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기본계획’에서는 분명 ‘석각형 각명비’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제안하고 있는데, 당선작에서는 이 ‘각명비’가 제외되어 있다. 그 대신 ‘위폐봉안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계되었던 것이다. 위폐봉안소는 국립묘지모델에서 아주 중요하게 간주되는 요소이다. 또한, ‘기본계획’에서는 변병생 모녀 조각상과 4·3의 고통을 드러내는 조각상을 설치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당선작에서는 변병생 모녀의 죽음터를 주차장으로 설계해놓고 있어 다른 곳에 변병생 모녀 조각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당선작이 변병생 모녀의 조각상을 왜 제주4·3평화공원 안에

---

8) 김백영·김민환(2008)은 국립묘지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수직으로 치솟은 위령탑의 존재를 거론했다.



설치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았다(편집부, 2002a: 32). 또한, 어느 할머니의 죽음 장소에 ‘변병생 할머니’상이라는 조각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변병생 모녀’와 어느 할머니의 죽음을 뒤섞어버리고 있었다. 또한, 모녀상은 변병생 모녀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 그곳에 마치 ‘세화리 해녀항쟁’<sup>9)</sup>같은 장면이 함께 형상화되어 있었으며, 4·3당시에는 ‘죽창시위’가 전혀 없었는데, 마치 죽창시위가 있었던 것처럼 형상화되었다. 1위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장의 총평에 제주4·3의 역사적 상징성을 잘 담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죽창시위 장면의 형상화처럼 기본적인 사실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작품이 무슨 역사적 상징성을 담았는지 신랄하게 비판받았다(편집부, 2002a: 31~32).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작품의 당선에는 당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받았다(박경훈, 2008: 43).

국립묘지모형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점은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2002년 8월 말이라는 당선작이 결정된 시기를 고려해보면, 이 시기가 4·3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군법회의 결과 유죄를 선고받아 그 결과 희생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이 되던 시기와 겹친다. 4·3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될 사람의 기준을 확정하는데 있어 많은 진통을 겪었다. 보수단체에서는 ‘공산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어떻게 희생자로 선정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는가 하면, 4·3관련단체에서는 “국가 범죄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기 때문에 전원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8: 159~160). 이런 분위기에서 ‘폭동론’의 자장 안에 있던 보수적 위원들은 ‘피해자’의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무장대 측 인사들은 피해자에서 제외되었다. 그 다음 쟁점이 바로 군법회의로 인해 사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나중에 한국전쟁 발발 직후 처형된 사람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쟁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평화공원 설계 공모의 당선작이 결정될 무렵이었다. 따라서 여전한 ‘폭동론’의 반발을 무마할 방법으로

9) ‘세화리 해녀항쟁’은 1931년 친일적인 해녀조합에 대하여 세화리 해녀들이 벌인 시위를 말한다. 4·3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식민지 시기 해녀들의 저항운동이었다.

<그림 1> 만병의 공동장지 위령비



자료: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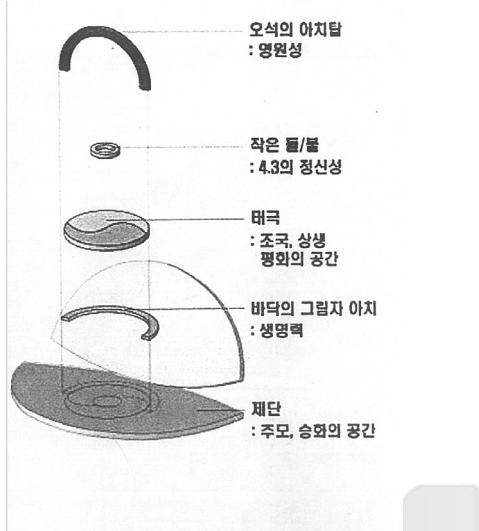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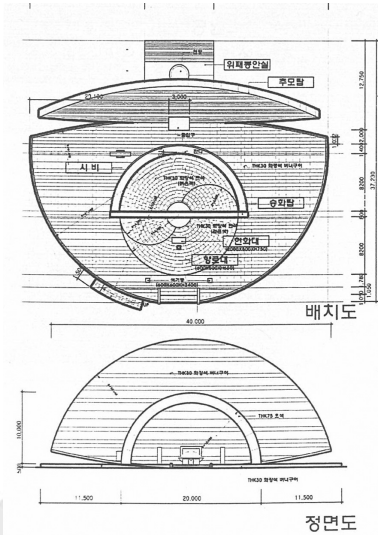
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국민화’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예비검속사건’의 위령비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소재로 위령비의 디자인을 구성한 것이 많았는데(<그림 1> 참조), 설계공모 당선작도 이들 위령비와 비슷하게 태극무늬를 중요 소재로 삼고 있다(<그림 2> 및 <그림 3> 참조). 위패봉안소 앞의 추모광장 바닥은, 너무나 거대해서 직접 현장에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도면상으로는 분명하게 태극문양을 소재로 그것을 ‘조국, 상생, 평화’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주의’의 상징인 ‘태극문양’을 ‘국가폭력론’이 기반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화주의’의 상징으로 전유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태극기 혹은 태극문양을 ‘대한민국 공화주의’의 상징으로 전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정근식은 5·18항쟁 기간에 사용된 태극기의 의미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탐구해야함을 주장하면서 태극기를 “저항하는 시민적 주체들의 정체성의 표현이고, 동시에 새롭게 구성하려는 정치공동체의 상징으로 규정”(정근식, 2007: 3)한 바 있다. 즉, 광주 5·18항쟁 당시 시민군들이 사용한 태극기를 “1948년 헌법에서 관념적으로 선취된 시민적 공화주의의 이념이 권위주의 군사

서 제주4·3평화공원의 국립묘지모 델화가 선택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 선정 논란이 직접적으로 평화공원 설계 공모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라면 간접적으로 제주도 내부에서는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 내의 기존 위령비 중의 일부와 당선작이 모티브가 아주 유사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즉, 이것은 4·3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비국민’으로 간

<그림 2> 위패봉안소 정면도 및 배치도 <그림 3> 위패봉안소 구성요소 설명도



자료: <그림 2>, 제주도(2002: 29).

<그림 4> 6월항쟁과 태극기



자료: 정근식(2007: 19).

정부에 대한 생존투쟁의 현장에서  
 실체화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로  
 파악했던 것이다(정근식, 2007: 4).  
 이런 현상이 5.18항쟁에서만 일어  
 난 것이 아니었다. 4·19혁명과 87  
 년 6월항쟁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상징으로 사용한 태극기  
 등 ‘시민적 공화주의’의 상징으로  
 활용된 태극기의 예들을 많다<그

림 4> 참조). 따라서 위패봉안소 앞 광장의 바닥의 문양을 ‘대한민국 공화주의’의 상징으로 전유하고자 한 시도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정말 ‘공화주의’적 성격을 갖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제주4·3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공화주의’를 구성하는 최대강령은, ‘억압에 대한 자구적 차원의 항쟁’이라는 ‘자위적 항쟁론’과 토벌대의 강경진압을 ‘국가폭력’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의 인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무장대 관련 인사들이 ‘피해자’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들의 위패가 위패봉안소에서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점에서 위패봉안소 앞에 위치한 ‘태극문양’은 온전하게 ‘대한민국 공화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태극문양’은 ‘대한민국 국가주의’를 의식한 위축된 ‘대한민국 공화주의’의 소극적 재현인 것이다.

## (2) 무장대 출신 ‘희생자’ 위패 철거

2006년 제주4·3평화공원의 위패봉안소에 안치되어 있던 9명의 위패가 철거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신고된 희생자가 중복되었거나 해당 유족이 희생자 신고를 철회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위패를 뺐다”(고성만, 2008: 161 재인용)는 것이었다. 희생자 신고가 중복되어 위패가 두 개 이상이라면 중복되는 것을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족이 신고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 위패가 철거되었다는 설명은 그 사정이 매우 복잡해 몇 단계를 거쳐야만 이해할 수 있다.

9명이 포함된 위패봉안소의 위패는 2005년 3월 25일 위패봉안소의 증축 완료 직후에 설치되었다. 유족들의 요구에 의해 기존의 위패봉안소보다 10배 늘어난 이 위패봉안소에 위패를 봉안한 사람들은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제주4·3실무위원회 차원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4·3위원회에서 제주4·3실무위원회가 제출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의결요청서를 심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판정할 기준이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4·3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설정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주4·3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으로 판정한 기준과 달라졌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주4·3실무위원회는 희생자로 인정했지만, 4·3위원회에서는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에 대해 제주4·3실무위원회는 신고한 유족을 설득하여 신고를 철회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들 9명의 위패는 위패봉안소에서 철거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4·3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희생자 심사기준을 마련할 때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무장대 출신으로 제주4·3사건 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들이었다. 4·3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① 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서, 현재 우리의 헌법체제하에서 보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되,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에 회복위원회, 2008: 150) 이로써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은 ‘선별’되어야만 했다. 이제 국가기구인 4·3위원회는 희생자들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 판관이 된 것이다.

이렇게 희생자 기준이 확정되어 사실상 4·3위원회에 의해 희생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 무장대 출신 희생자 유족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게 되었다. 하나는 희생자 신고를 ‘철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심사를 받는 것이었다. 4·3위원회의 군경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희생자 제외 대상 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대상자의 유족들에게 신고를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그들이 신고 철회를 권고한 이유는 “희생자 심사에서 ‘불인정’될 것이 분명한데, 그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줄 수는 없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희생자 선정 기준 제외 대상자들을 ‘불인정’ 결정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성만, 2008: 165 재인용)는 것이다. 4·3위원회 민간인 위원들의 이런 권고는 당시 상황에서 평가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3위원회 심사에서 희생자로서 불인정되면, 향후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한 방법 밖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신고를 철회한 다음, 이후 상황이 유리하게 조성되면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다시 심사를 받는 편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구제’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방법이었다.<sup>10)</sup> 따라서 대상 유족 대부분은 4·3위원회 민간인

10) 4·3위원회 김종민 전문위원과의 인터뷰(2009.11.10.)에서 김종민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위원들의 권고대로 신고를 철회했다. 신고중복 등의 사유로 신고가 철회된 대상자는 모두 778명이었는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8: 178),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무장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4·3위원회 민간인 위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끝까지 ‘심사’를 받은 유족은 단 한 명이다. 당시 4·3사업소 소장이었고 제주4·3실무위원회 간사였던 김동화였다.<sup>11)</sup> 그는 4·3위원회가 무장대 희생자 유족들에게 신고 철회를 권고한 것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4·3특별법의 정신은 용서와 화해이지 ‘선별’이 아니었기 때문에 4·3위원회에서 희생자 선정 기준으로 무장대 배제라는 것을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4·3위원회 내에서 전원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밀어붙였으면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한 모든 사람들이 희생자로 인정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4·3위원회가 무장대 희생자 유족들에게 신고 철회를 권고한 것도, 일부 선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4·3위원회가 신고한 전원을 희생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행정적 발상이었다고 강조했다.

4·3위원회에 대한 불신 이외에도 김동화가 신고 철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인데, 이 이유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는 4·3사업소 소장으로서, 그리고 제주4·3실무위원회 간사로서 무장대 희생자 유족들에게 신청서를 내라고 독려했던 장본인 중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는 본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어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양민’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는 분명 ‘단선 반대’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무장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 김동화는 신념을 갖고 무장대 활동을 한 자신의 아버지를 왜 희생자로 신청한 것일까? 신념을 갖고 무장대 활동을 한 자신의 아버지가 희생자인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는 교전 중에 사망하지 않고 체포되어 ‘재판 없이’ 즉결처분되었을

---

11) 이하의 내용은 김동화와의 인터뷰(2010.1.20.)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다. 적국 사이의 전쟁에서도 포로에 대한 즉결처분은 전쟁범죄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제주4·3사건에서도 토벌대에 의한 수많은 즉결처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대부분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토벌대에 의해 즉결처분 당한 김동화 아버지의 사례는, 4·3위원회가 기반하고 있던 ‘국가폭력론’의 현실적인 한계와 최대치를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즉결처분 조차도 이념에 따라 ‘선별’되어 구제되었던 것이다. 김동화는 희생자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고, 그래서 4·3위원회에서 그의 아버지는 희생자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그런 후 그는 불인정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그의 아버지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4·3특별법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꽤 오랫동안 4·3사건의 희생자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sup>12)</sup>

이렇게 해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의 범주가 결정되었다. 우선, 무장대 및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물론 가해자는 무장대 및 토벌대 양자 모두이다. 다음으로, 무장대의 공격으로 사망한 토벌대 ‘국가유공자’들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무장대 관련자들은 희생자에서 배제되었다. 그들 역시 즉결처분 등 ‘국가폭력’의 ‘희생자’였음에도 그렇게 되었다. 무장대 희생자의 위패가 위패 봉안소에서 제거되었던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였다.<sup>13)</sup>

- 12) 김동화는 자신의 아버지의 유해가 옛 ‘정뜨르 비행장’ 인근(현 제주국제공항)의 학살터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정뜨르 비행장’ 인근에서 발굴된 4·3사건 희생자 유해는 제주4·3평화공원 내 ‘4·3희생자 발굴유해 봉안관’에 모셔져 있는데, 그렇다면, 김동화의 아버지는 ‘4·3위원회’에 의해 희생자로 판정받지 못했지만, 그 시신은 제주4·3평화공원에 모셔져 있는 것이 된다. ‘위패봉안소’에 위패는 없지만 시신은 모셔져 있는 이런 상태는 국가가 희생자를 ‘선별’하는 것의 모순을 다시 한 번 부각한다.
- 13) 4·3사건 희생자 판정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제주4·3사건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서 희생자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것 역시 무장대 출신의 배제라는 원칙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1948년과 1949년에 이뤄진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수형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유리한 길이 열렸고, 결국 그들은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군인과 경찰을 4·3사건 희생자로 볼 수 있으나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이들도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무장대 희생자들의 위패가 제거되면서, 위패봉안소에 모셔진 위패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의 경계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들 위패 사이의 차이는 없다. 과거 국가유공자로서 특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나, 그들에 의해 죽었을지도 모르는 민간인 피해자들이나 모두 동일한 희생자로서 같은 크기의 위패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뿐이다. 즉, 이 공간에서는 전체 희생자의 78.1%에 대해 책임이 있는<sup>14)</sup> 토벌대의 책임여부가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가주의’의 상징인 ‘국가유공자’와 ‘대한민국 공화주의’를 구성하는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의해 ‘화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화해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희생자를 ‘균질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곳은 더 이상 가해의 책임을 따지는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

### 3)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과정의 갈등: ‘폭동론’의 ‘아른거림’

#### (1)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에 대한 관점의 차이

‘폭동론’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은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내용은 제주도 내부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폭동론’적 내용은 전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를 충실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공화주의’(자위적 저항론 및 국가폭력론)의 내용과,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넘어서고자 했던 ‘한반도 민족주의’(적극적 항쟁론)적 내용 사이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을 며칠 앞두고 ‘아트워크(Art Work)’ 작품 두 점<sup>15)</sup>의 전시가 무산되면서 이런 차이는 표면화했다.

제주4·3평화기념관은 크게 두 가지 전시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우선, 사진 및 패널 설명에 의한 전시로 이것은 제주4·3사건의 역사를 『진상조사보고서』의

14)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전체 희생자 중 78.1%가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였음을 밝히고 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537).

15) 한 점은 전면 철거당했고, 다른 한 점은 중요한 구성요소 하나가 제외된 채 공개되었다.



내용에 맞게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폭동론’적 내용에 대한 논리적이고 강력한 증거에 의한 반박은 이곳 전시의 백미이며, 또한, 한국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해방’ 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밀한 묘사는 그 자체로 높이 평가받을 현대사 박물관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의 상황적 ‘한계’ 또한 이곳에 반영되어 있다. ‘폭동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세력들의 존재 때문에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성격의 평가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학살’과 ‘항쟁’의 두 축의 역사 중 ‘항쟁’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일단 ‘보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성만, 2008: 182). 다른 하나의 전시방법은 미술 작품인 ‘아트워크’를 통한 전시인데, 총 12점의 아트워크가 기획되었다. 아트워크는 전시할 사료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둔 예술작품으로 사료를 대체하고, 제주4·3사건을 보다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친근하게 묘사하기 위해 도입이 결정되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충실히 반영한 사진 및 패널 설명에 의한 전시와,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는 아트워크 작품을 통한 전시 사이에는 원래부터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속성상 ‘사실’과 ‘상상력’은 강조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기본적인 지향점이 일치하면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한쪽의 장점이 상대방의 단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향점이 다르면, 이 둘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은 증폭될 여지가 많았다. 제주 4·3평화기념관의 경우, 일부 아트워크 작품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관계로 전환되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충실히 반영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아트워크 작품은 『진상조사보고서』라는 틀 내에서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원했다. 반면, 『진상조사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싶은 입장은, 아트워크에 발휘된 상상력을 충동원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넘어서고자 했다. 제주4·3평화기념관 내의 아트워크 작품들 중 몇몇은 확실히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넘고자 시도했다. 그 작품들은 ‘적극적 항쟁론’의 내용을 강하게 담기를 원했고,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분명히 밝힌 제주4·3사건의 가해자인 ‘미군정’과 ‘이승만’을 시각적으로 보다 강조하고 싶어했다. 이런 입장은 곧바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충실히 반영하는 전시를 원하는 세력에 의해 저지되었다. 두 개의 아트워크 작품이

제대로 전시될 수 없었던 배경은 여기에 있었다.

## (2) 사라진 아트워크 작품

사진 및 패널 설명에 의한 전시와 아트워크를 통한 전시는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대부분은 상호보완적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비교적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세 작품은 별도의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아트워크 작품 중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가장 충돌하고 있는 작품은, 원래의 계획대로 현재 전시가 이뤄지고 있는 강요배의 ‘제주도민의 5·10(단선반대 산행)’이다. 사진 및 패널에 의해 5·10선거 무산에 대한 설명은,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무장대는 5·10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 보냈다. 선거 당일 마을에서는 경찰가족이나 우익청년단 간부, 선거관리위원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주민들은 산이나 숲으로 가서 머물다 선거가 끝난 후에야 돌아왔다”고 되어 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8: 231). 주민들과 무장대 사이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연대’를 암시할 만한 문구는 거의 생략 혹은 유보되어 있으며, 무장대에 의해 제주도민들이 강제로 산으로 올려 보내진 것 같은 뉘앙스가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강요배의 작품에서는 주민들이 무장대의 강제에 의해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산에 올라 5·10선거를 거부한 것처럼 그려져 있다. “산에 오르는 가족, 보초 선 무장대, 움막 집 짓는 사람들, 초원에서 연설회, 고사리 꺾는 소녀 등이 그려져 있어” 아주 “평화로운 풍경”(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8: 270)이다. 여기서 주민들은 무장대와 뜻을 같이하는 존재로서 무장대와 아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무장대와 양민을 구분하여 ‘양민’들의 피해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넘어서서 제주도민의 분단에 대한 ‘적극적인 항쟁’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별다른 문제없이 그대로 전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작품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하고(가로 17m, 세로 2m)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평화로워서’일 것이다. 이 작품은 사진 및 패널설명 전시 윗부분에 그려져 있어, 이 그림을 보려면 관람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끊고 위를 쳐다보아야 한다. 또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눈에 그림에서 묘사하는 내용을

<그림 5> 김대중 작가의 ‘미군정의 실체’



자료: 《한겨레신문》(2008.4.18.), 25면.

파악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그림의 내용이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해서 제주4·3사건이라는 심각한 내용의 전시에서 한숨 돌리는 역할을 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전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작품이다.

다음은 전시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일부분이 수정된 작품으로, 이 두 작품은 모두 제주4·3사건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최종책임자로 지명된 ‘미군정’과 이승만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전시에서 완전히 제외된 작품은 김대중 작가의 ‘미군정의 실체’라는 작품이다(<그림 5>). 이 작품은 오라리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만화작품이다. 오라리 사건은 우익청년들에 의해 저질러진 방화 및 살인사건을 마치 무장대 측이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서 미군정이 무장대와의 협상을 무효로 하고 강경책을 채택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미군정이 의도적으로 오라리 사건을 조작하여 무장대에 대한 강경책의 빌미로 삼았다고 서술되어 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200).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미국 백악관에서 미군정에게 직접 이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작품의 오른쪽 아래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이다. 백악관에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한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증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상조사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 추측성 표현을 한 것이며, 따라서 역사관 전시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작품은 철거되고 사진 및 설명 패널로 대체되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8: 211).

‘미군정의 실체’처럼 전면적으로 철거되지는 않았지만, 작품의 일부가 수정되

<그림 6> 박불동의 <행방불명(제주사람들)>의 원작



자료: “아름다운 공원, ‘성령의 연못’”, 《제주의 소리》(2010.8.10.),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5906#>

어 전시되고 있는 작품은 박불동의 ‘행방불명(제주사람들)’이다(<그림 6>). 이 작품은 첩판에 뚫린 구멍들은 행방불명된 3천여 명의 제주도민을 상징하며, 구멍에 꿰어진 철선들은 총알의 궤적을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행방불명된 제주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다. 이는 이들의 행방불명의 최종책임자가 이승만 당시 대통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타임(Time)》의 표지를 장식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얼굴은 그림이나 사진이 아니라 영사기를 통해 벽면에 비춰지도록 구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것은 영사기를 꺼서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었다(<그림 7> 참조). 또한 벽면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주도 순시 시 지프차에 타고 있는 사진을 활용한 작품 역시 영사기를 꺼버림으로써 이 작업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요소가 빠져버렸다.

이 두 작품이 철거 혹은 수정된 표면적인 이유는 서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들의 철거 혹은 수정을 주도한 사람은 양조훈 4·3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김종민 4·3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김종민 전문위원은 김대중 작가의 작품들을 철거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철거를 결정했다”(김종민 전문위원과의 인터뷰, 2009.11.10.)고 이야기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라리 사건에 대해 미국정부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군정의 실체’라는 작품은 『진상조사보고

<그림 7> 수정된 박불똥의 <행방불명(제주사람들)>



자료: “‘아름다운 공원’, ‘성령의 연못’”, 《제주의 소리》(2010.8.10.).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5906#>

서』의 내용에 충실하게 전시내용을 구성하기로 한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박불똥의 <행방불명(제주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이 『진상조사보고서』와 모순되지 않는다. 『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 제기된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과 합치하느냐 불합치하느냐의 여부만으로 작품의 전시와 수정·철폐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이유 이외에 작품 전시 여부를 결정한 다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제주4·3평화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토대로 일정 수준에서 유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폭동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어느 정도 의식하느냐 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제주4·3평화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폭동론’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뿐 공간형성 과정이나 전시내용의 선정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폭동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이런 ‘불개입’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4·3위원회의 두 위원들과 전시연출자문단의 입장이 달랐던 것이다. 4·3위원회의 두 위원은, 비록 실질적으로 ‘폭동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직접적으로 전시내용과 관련하여 개입해 오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들은 ‘폭동론’을 지지하는 세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4·3위원회의 모든 활동에서 이들과 충돌해왔기 때문에 ‘폭동론’을 주장하는 세력에게 불필요한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시기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민감한 태도는 이해할만 했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 공화주의’적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4·3위원회 활동 자체에 대한 공격이 거세진 시점이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8: 125). 따라서 4·3위원회의 두 위원에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미군과 이승만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두 개의 아트워크 작품은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최선이었다(김종민 전문위원과의 2009.11.10. 인터뷰). 반면, 전시연출자문단은 전시내용 수립 과정에서 ‘폭동론’ 세력의 ‘불개입’을 말 그대로의 불개입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전시내용에서 아무리 ‘폭동론’적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이 되더라도 ‘폭동론’의 반발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폭동론’에 반대하는 내용을 최대한 전시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박경훈과의 인터뷰, 2011.4.26.). 강요배의 작품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트워크 작품 전시와 관련하여 표출된 이 두 집단의 갈등은 마치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공화주의’적 입장과 ‘적극적 항쟁론’을 주장하는 세력의 갈등처럼 보이게 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런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주4·3평화공원 개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염두에 두면, 역시 가장 큰 갈등의 축은 ‘폭동론’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 두 세력 사이에 존재한다. ‘폭동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제주4·3평화공원 개장의 과정에 분명히 ‘부재’했지만, 제주4·3평화공원 조성의 모든 과정에서 이들의 존재는 ‘편재’해 있었다. 아트워크 작품 전시와 관련된 ‘폭동론’의 ‘아른거림(absent presence)<sup>16)</sup>이라는 이 모순된

16) ‘아른거림(absent presence)’이라는 용어는 롤랑 바르뜨가 특정한 사진에 대한 비평을

상황은 제주4·3사건에 대해서 ‘폭동론’적 해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폭동론’의 ‘아른거림’이라는 이 상황은 사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의 전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주4·3평화공원이 국립묘지 모델을 닮아있는 것도 바로 그 효과 때문이었다. 직접 드러나 개입해 들어갔던 것보다 오히려 이런 ‘아른거림’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 4) ‘폭동론’을 쫓는 부적: ‘백비’와 ‘빈 위패’

겉으로 보기에 이곳에서 ‘폭동론’을 주장한 세력들은 공원의 공간적 형성과 전시시설의 내용 결정 과정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공원조성 자체를 반대했다. 이 반대는 제주4·3평화공원 조성을 주도한 사람들이 항상 보이지 않는 적을 상정하게 했으며, 그것과의 싸움은 일종의 ‘내적 검열’ 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한 곳도 제주4·3평화공원이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백비’와 ‘빈 위패’의 존재이다.

‘백비’는 제주4·3평화공원 설계안에는 없었던 존재이지만, 제주의 시민사회 단체가 개입하여 설치한 ‘기념비’이다. ‘백비’는 아무런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은 형태만 있는 비석인데, 이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가 당대에서는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과제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즉, ‘당대의 한계’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여백’이며, 4·3을 현재에 가둬두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개방한다는 의미의 ‘여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역사적 의미 부여가 완결되지 않은 현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인 동시에, 4·3과 관련된 미래 세대의 ‘권리’ 혹은 ‘의무’를 형상화한 인상적인 조형물이다.

---

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흔히 ‘부재하는 현전(顯前)’으로 번역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아른거림’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했다.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이 상황에 완전히 부합하는 우리 고유어가 ‘아른거림’이라는 낱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무장대 출신의 위패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빈 위패’ 역시,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은, 이름이 각명된 위패와 그렇지 않은 위패의 차이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 1만 4,000여 개나 되는 위패 중 일부를 제거하면 나머지 위패 전체를 옮겨야 하는 대규모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래 무장대 출신 희생자의 위패를 제거하고 나머지 위패를 옮기는 대신 원래 무장대 출신 희생자의 위패가 있는 곳에 빈 위패를 채워 넣었던 것이다.<sup>17)</sup> 사정을 자세히 모르면, 그냥 단순히 비어있는 위패일 뿐이지만, 그것에 의혹을 갖는 순간 그 빈 위패는 무장대 희생자들의 부재를 강하게 암시한다. 이처럼 ‘백바’와 ‘빈 위패’는 ‘폭동론’이라는 유령과 맞서고 있는 ‘부적’인 것이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4·3평화공원 조성에 이르는 긴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폭동론’에 맞선 ‘국가폭력론’과 ‘항쟁론’이라는 두 대항담론의 지지자들이 연대를 형성하고 갈등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제주4·3평화공원의 직접적인 형성과정에서는 이 두 입장 간의 첨예한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두 입장의 갈등은 ‘폭동론’에 의해 구조적으로 매개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폭동론’의 ‘아른거림(absent pres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런데 폭동론의 이 ‘아른거림’은 어느 정도로 강력할까? 이 논문의 제일

17) 2011년 1월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3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희생자 469명과 유족 2,016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날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위패는 4월 3일 위령제가 열리는 날까지 위패봉안소에 봉안되지 못했다. 예산 부족이 주요한 이유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4·3사업소 관계자는 “위패봉안실에 여유가 있지만 지역별로 봉안하도록 돼 있는 만큼 위패를 움직일 수 없어 추가 봉안실 설치를 위해 이번에는 현수막을 이용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고 해명했다<<한라일보>>(2011.4.1.), 한라일보 홈페이지 <http://www.ihalla.com>에서 ‘현수막 위패’로 검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옛날’보다 강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서 지정된 지금은 더더욱 그러하다.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이라는 명칭은 『4·3특별법』에 기반을 두어 전개된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락의 성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즉,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를 추념하는 명칭인 것이다. 이것을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명칭과 비교해 보면, 그 성격의 특성이 분명해진다. 두 사건 모두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발생했지만, 광주5·18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 반해, 제주4·3은 여전히 ‘사건’이며 오직 ‘희생자’만 ‘추념’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권에 의해 선택된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이라는 명칭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공화주의’적 노선의 강고함을 드러내는 명칭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동론의 이른거림의 강력함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물론 폭동론은 끊임없이 이른거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폭동론 그 자체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주4·3사건의 해결을 현재의 단계에 고착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인식하면, 폭동론의 이른거림을 내쫓기 위해 사용되었던, 앞에서 언급한 ‘백비’ 등의 ‘부적’들은 이제 다른 효용을 갖는다. 그 ‘부적’들은 현 상태에 만족하려는 ‘유혹’을 내쫓는 ‘부적’이기도 한 것이다. 아주 어렵게 도달한 현재의 ‘공모적 안정성’이라는 성과가,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약조건’으로 변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부적’ 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적’들을 사회에 더욱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2014년 4월 27일 투고, 5월 23일 심사, 5월 30일 채택)

## □ 주요 용어

제주4·3사건, 제주4·3평화공원, 폭동론, 국가폭력론, 항쟁론, 폭동론의 ‘이른거림’

## □ 참고문헌

- 『김대중 작가의 ‘미군정의 실체’』, 《한겨레신문》, 2008.4.18., 25면.
- 『‘아름다운 공원’, ‘성령의 연못’』, 《제주의 소리》, 2010.8.10.,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5906#>.
- 《한라일보》, 2011.4.1(한라일보 홈페이지 <http://www.ihalla.com>에서 ‘현수막 위패’로 검색).
- 『대통령 4·3 불참, 보수 측 이념 공세 때문?』, 《노컷뉴스》, 2014.4.3, <http://www.nocutnews.co.kr/news/4000020>, 4월 17일 검색.
- 고성만. 2005.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4·3과 역사》, 제5호.
- \_\_\_\_\_. 2008. 『4·3위원회의 기념사업에서 선택되고 제외되는 것들』. 《역사비평》, 통권 82호.
- 김동춘. 2000. 『민간인 학살 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전쟁과 인권-학살의 세기를 넘어서』(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 발표문집).
- 김민환. 2012.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백영·김민환. 2008. 『학살과 내전, 담론적 재현과 공간적 재현의 간극: 거창사건추모공원의 공간분석』. 《사회와역사》, 제78집.
- 김영범. 2003.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2호.
- 김종민. 1999. 『4·3 이후 50년』.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범국민위원회 간.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 박경훈. 2008. 『4·3평화기념관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모색』. 제주4·3연구소 창립 제19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집 『4·3 평화와 기억』.
- 박명림. 1999.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이해: 제주4·3과 한국현대사』.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범국민위원회 간.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 박찬식. 2007. 『‘4·3’의 公的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년 여름호 제41집.
- 서중석. 2007. 『제주4·3 과거사 청산의 의의와 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설립에 관한 도민 토론회 자료집.
- 양정심. 2000. 『제주4·3특별법과 양민학살담론, 그것을 뛰어 넘어』. 《역사연구》, 제7호.

- 정근식. 2007.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저항의 상징 다시 읽기: 시민적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콜로키움 발표문.
- \_\_\_\_\_. 2009. 『한국의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 또는 ‘과거청산’』, 臺灣歷史與人權跨學科學生交流工作坊 발표문.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①』. 전예원.
- \_\_\_\_\_. 1995. 『4·3은 말한다 ②』. 전예원.
- \_\_\_\_\_. 1998. 『4·3은 말한다 ⑤』. 전예원.
- 제주도. 2002. 『제주4·3평화공원조성 실시설계 보고서』. 제주도.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_\_\_\_\_. 2008. 『화해와 상생: 제주4·3위원회 백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2001.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 조현연. 2000. 『한국 현대정치학의 악몽: 국가폭력』. 책세상.
- 편집부. 2002a. 『4·3평화공원 현상공모의 문제덩어리들』. 《제주문화예술》, 2002년 가을호, 총권 제6호.
- \_\_\_\_\_. 2002b. 『4·3평화공원 당선작과 낙선작 비교』. 《제주문화예술》, 2002년 가을호, 총권 제6호.

## □ Abstract

### **Contested memories in the Jeju April 3rd Peace Park** the ‘absent presence’ of the Riot interpretation and solidarity split

Kim, Minhwan

In the ‘resolution’ of the Jeju April 3rd Incident, we are drawing an end to the first phase - acknowledging the innocent deaths incurred by the incident - and entering the second phase of imbuing these deaths with historical

significance. This paper aims to closely examine the formation of the Jeju April 3rd Peace Park as the culmination of all the conflicts and compromises of the first phase. On one hand, this paper concerns the evaluation of the successes and the limits of the first phase, and, on the other hand, it aims to settle prospective points of contention within the second phase.

Existing literature on the Jeju April 3rd Incident can be largely understood through the three following interpretation. First is the ‘Riot interpretation’ of the US and the ruling parties, second is the varied and divided ‘Uprising interpretation’, and the third is the ‘State Violence interpretation’, which traces its roots from earlier theories like the ‘Genocide interpretation’. In the earlier stages of April 3rd resolution, proponents of the ‘Uprising interpretation’ and the ‘Genocide interpretation(State Violence interpretation)’ formed a powerful coalition against the ‘Riot interpretation’. As legislative and governmental solutions for April 3rd began to arise, however, ‘State Violence interpretation’ began to part ways with ‘Uprising interpretat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two sides became especially acute during the formation of the April 3rd Peace Park. The author argues that although it was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e Violence interpretation’ and ‘Uprising interpretation’ that surfaced, this conflict was, in fact, structurally mediated through the ‘Riot interpretation’. To emphasize this point, the author introduces in this paper the notion of the ‘absent presence’ of the ‘Riot interpretation’.

Keywords: the Jeju April 3rd Incident, the Jeju April 3rd Peace Park, Riot interpretation, State Violence interpretation, Uprising interpretation, ‘absent presence’ of the Riot interpretation